

# 예산총칙

2020년도 추가경정 제4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673,918,209	80,217,546
일반회계	2,107,628,599	63,228,858
특별회계	566,289,610	16,988,688
공기업특별회계	345,660,415	10,369,812
상수도사업	82,937,741	2,488,132
하수도사업	262,722,674	7,881,680
기타특별회계	220,629,195	6,618,876
공유재산관리	48,724,803	1,461,744
의료급여기금	8,908,991	267,270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2,273,902	68,21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711,441	21,343
교통사업	73,117,990	2,193,540
철도건설사업	11,081,945	332,458
폐기물처리시설	5,590,850	167,726
도시재정비촉진	1,316,760	39,503
도시개발	26,679,955	800,399
공공시설등 설치	4,000,156	120,005
문화시설건립	9,508,369	285,251
도시재생	28,714,033	861,42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2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20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658,991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12,924,007천원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7,734,984천원

제 7 조 2020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98,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